

「직제 규정」 개정문

개정 2026. 3. 9. · 시행 2026. 3. 9.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직제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구)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대학 기본 기관 : 총장, 부총장
2. 대학원 : 일반대학원, 신학대학원, 경영대학원, 임상간호대학원
3. 대학 : 신학대학, 창의융합대학, 미래융합대학, 간호대학, 약학대학
4. 행정본부 : 교무처, 교무처, 학생처, 기획처, 사무처, 국제처, 연구처, 재무처, 입학처
5. 위원회 :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
6. 대학부속기관 : 대학부속기관 : 대학교회, 생활건강증진원, 재림교회/엘렌G화잇연구센터, 박물관, 대학언론사, 인성교육수련원, 공통기기실, 실험동물연구센터, SU-FARM, ITTC국제중독센터
7. 부속교육기관 : 평생교육원,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, 유치원/어린이집, 생활교육원
8. 부설연구기관 : 융합연구센터, 부설연구소, 자율연구소, 북아태지회연구소, 정책연구소
9.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
- 10.
11. 교육혁신원
12. 글로벌사회혁신원
- 13.
14. 학술정보원
- 15.
16. 예비군대대
17. 학교기업
- 18.
- 19.
20. 대학일자리본부
21. SU인권센터
22. AI융합교육원
- 23.
24. 브랜드전략본부
25. 내부감사실
26. RISE사업단
27. 국제전략원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브랜드전략본부) ① 브랜드전략본부에 부속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을 둔다.

② 부속팀은 총장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며, 부속팀장을 둔다.

③ 커뮤니케이션팀은 대학의 브랜드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, 커뮤니케이션팀장을 둔다.

④ 대외협력팀은 대학의 대외협력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며, 대외협력팀장을 둔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국제처) ① 국제처에 국제처장을 두며 국제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화역량강화, 국제적 위상 및 경쟁력 확보 등 국제처 업무 등을 통할한다.

② 국제처 산하 한국어교육센터(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), 글로벌인재지원센터(Global Talent

Support Center), 글로벌교류센터(International Engagement Center), 글로벌협력센터(Global Partnerships Center)를 둔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(연구처) ① 연구처에 연구처장을 두며 연구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.
② 연구처에 연구산학팀, 실험동물연구센터, 공통기기실을 둔다.

제19조제2항 중 "구매팀과 수익사업팀을 둔다(개정 2025-01-06)."를 "구매팀을 둔다."로 한다.

제23조제2항 중 "금연금주클리닉"을 "금연금주클리닉센터"로 한다.

제28조의 제목 "공통기기실"을 삭제한다.

제28조 중 "공통기기실에 공통기기실장을 둔다. (개정 2025-11-10)"를 삭제한다.

제36조제2항 중 "기술지주회사"를 "기술지주회사, 미래캠퍼스사업단"으로 한다.

제41조의 제목 "캠퍼스사업단"을 삭제한다.

제41조 중 "캠퍼스사업단에 캠퍼스사업단장을 두며 캠퍼스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캠퍼스사업 업무 등을 통할한다."를 삭제한다.

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4조

제45조제2항 중 "AI중독예방 및 재활센터"를 "AI융합학생창업센터"로 한다.

제4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6조의5(국제전략원) 국제전략원에 국제전략원장을 두며 국제전략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전략 업무를 총괄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